



축산폐수 규제범위 대폭 확대

— 환경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입법예고 —

환경처는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폐수 규제범위를 대폭 확대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특히 영세 양축농가들에게도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된 (안)대로 확정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돈농가들의 탈양돈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돈사면적 250m² 이상(75평) 1,400m²(420평) 미만 또는 사육두수 200두 이상 1,000두 미만의 양돈시설은 의무적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돈사면적 500m² 이상 1,400m² 미만에만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규제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환경처는 이들 양돈시설의 폐수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공해배출부과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대로 입법될 경우 새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양돈농가수는 약 6,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은 또 기존 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던 대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이 법에서 규제하도록 했는데 돈사면적 1,400m² 이상 또는 사육두수 1천두 이상 양돈농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돈사 면적이 700m² 이상 또는 500두 이상이 해당된다.

◇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규모

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1천4백m ² 이상 또는 사육두수 1천두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7백m ² 이상 또는 5백두 이상
소 사육시설	면적 1천2백m ² 이상 또는 사육두수 1백두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백m ² 이상 또는 50두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1천2백m ² 이상 또는 사육두수 1백두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보호구역에서는 면적 6백m ² 이상 또는 50두 이상

◇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축산규모

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2백50m ² 이상, 1천4백m ² 미만 또는 사육두수 2백두 이상, 1천두 미만
소 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 1천2백m ² 미만 또는 사육두수 30두 이상, 1백두 미만
말 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이상, 1천2백m ² 미만 또는 사육두수 30두 이상, 1백두 미만
닭·오리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이상, 또는 3천두 이상
사슴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이상, 또는 60두 이상
양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이상, 또는 3백두 이상
여우·밍크사육시설	면적 3백50m ² 이상, 또는 3백두 이상

이에대해 대다수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영세양돈농가들에게 설치차금 등의 지원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양돈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라는 생존권 박탈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과 함께 정화시설 설치차금 보조 및 장기저리로 융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